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8호

「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## 강릉시의회의장

#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,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예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라. 예방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7조)
- 바. 포상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jhyoon93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유해약물”이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각물질,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강릉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
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
5.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6.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예방사업)**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
3.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
4.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
5.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